

예 산 총 칙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6,086,331	9,482,590
일반회계	294,837,045	8,845,111
특별회계	21,249,286	637,479
공기업특별회계	12,661,614	379,848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661,614	379,848
기타특별회계	8,587,672	257,6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0,322	15,31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91,142	35,73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05,411	69,162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01,977	9,05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78,820	128,36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90,55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